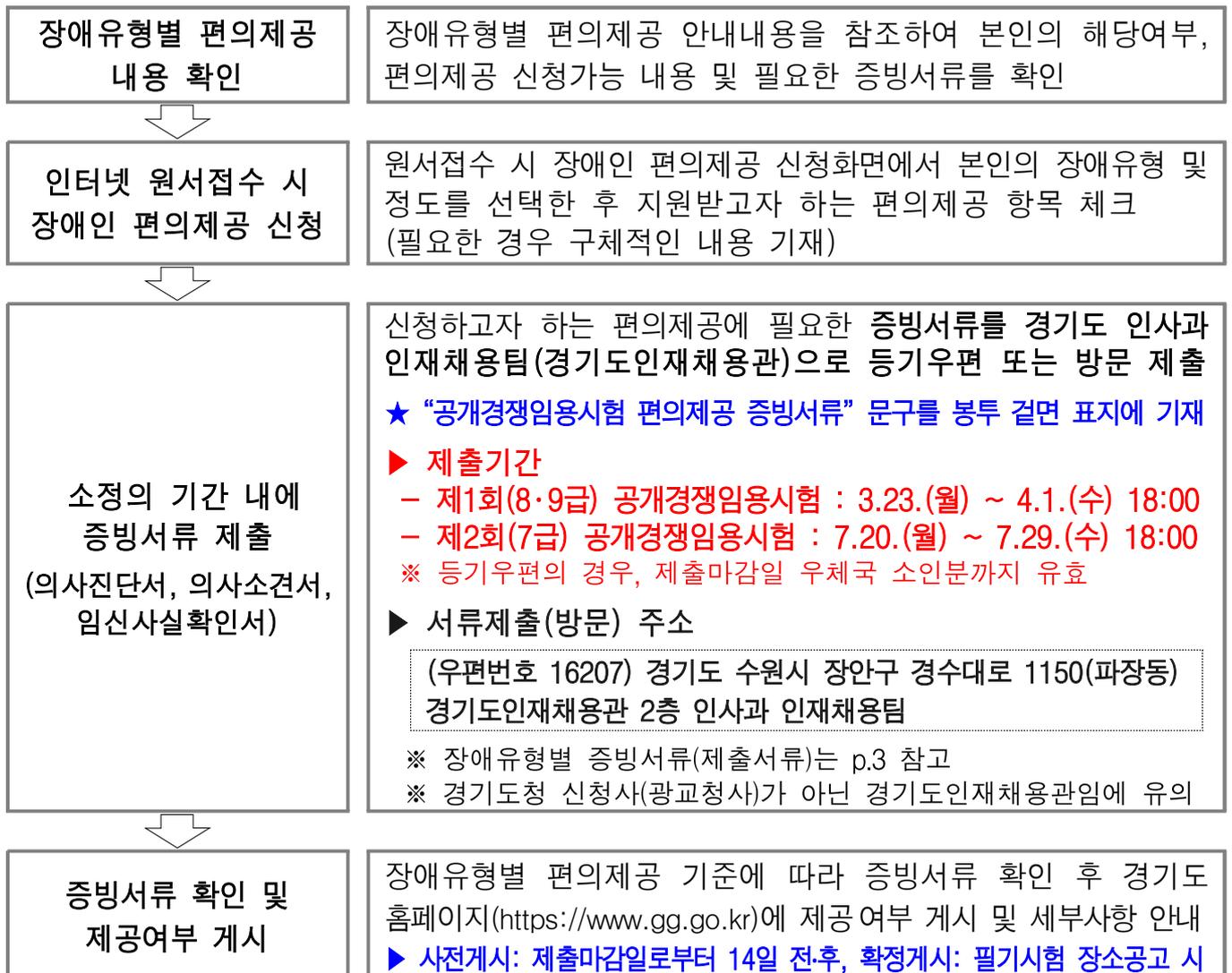


□ **편의제공 대상**

- 2026년도 제1회(8·9급) 및 제2회(7급)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
 - 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 등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,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 - ②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 - ③ 임신부, 과민성대장·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

□ **편의제공 신청 절차 (원서접수기간 신청)**



□ 편의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

- '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(p.3 참고)'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, '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(p.3 참고)'를 확인 [의사진단서 제출 시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됨]

- 원서접수 시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, 점자문제지, 대필 등의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내용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
※ 시험시간 연장 편의제공은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서만 신청 가능

- 의사진단서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 [발급일 및 발급내용 확인(p.6)]

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됨

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 가능 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
- 기존 경기도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제공을 받았던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.

(단, 해당 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4년 이내여야 함)

※ (예시) 이전시험과 동일한 편의제공을 신청하여 증빙서류 제출 면제가 가능한 경우
- 제1회(8·9급) 공개경쟁임용시험 : 2022년 3월 28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
- 제2회(7급) 공개경쟁임용시험 : 2022년 7월 25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

- 타 기관 시험에서 증빙서류 제출 후 편의제공을 받았더라도 시험실시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제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시험 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편의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(☎ 031-8008-4040, 404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(필기시험)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제공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고	
지체 장애	상지	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대문제지 • 확대답안지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-	
	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답안지 대필 	-	기존 1~3급
	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	-	기존 4~6급
	하지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-	기존 1~6급
뇌병변 장애	공 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대문제지 • 확대답안지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•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-	
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• 답안지 대필 	-	기존 1~3급
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4~6급
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	-	
시각 장애	공 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대문제지 • 축소문제지 • 확대답안지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	-	
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7배 연장 • 음성지원컴퓨터 • 점자문제지 	-*	기존 1~2급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3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	-	기존 3급 1,2호

장애유형 및 정도			편의제공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고
시각 장애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7배 연장 • 음성지원컴퓨터 • 점자문제지 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4급 2호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	-*	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	-*	기존 45급 1호
		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하로 감소한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 	-*	기존 5급 2호
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		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	-	기존 6급
청각 장애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화통역사 배치 •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	-	기존 2~6급	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/ 일시적 신체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	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(원본)		
	임신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 중 화장실 이용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• 높낮이 조절 책상 	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		
	과민성대장·방광증후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 중 화장실 이용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	의사진단서 (원본)		

※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A2 규격의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

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

※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 해당 항목 장애유형(기등급 등)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

□ **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(면접시험)**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제공 내용
지체 장애	상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담도우미 지원 • 관련서식 확대 제공 •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•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• 면접자료 작성시간 1.5배 연장
	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담도우미 지원 •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 •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
뇌병변 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담도우미 지원 •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• 관련서식 확대 제공 •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•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• 면접자료 작성시간 1.5배 연장 •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
시각 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담도우미 지원 •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• 관련서식 확대 제공 • 관련서식 점자 지원 •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•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• 면접자료 작성시간 1.5배 연장
청각 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 등) 지원 •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• 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 •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•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•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
기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

※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, 면접자료 작성시간 1.5배 연장은 진단서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 제출 필요(종합병원 이상)

□ (해당 응시자)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○ 발급기관 :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(또는 상급종합병원)

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 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※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
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로 증빙 가능

○ 발급일자 :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4년 이내 발급 (원본)

구 분	제1회(8·9급) 공채	제2회(7급) 공채
응시원서 접수 마감일	2026년 3월 27일	2026년 7월 24일
진단서 발급일	2022년 3월 28일 이후	2022년 7월 25일 이후

○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(아래 3가지)

-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* 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/시야각 명기
 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 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- 예시)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
 ⇒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
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<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	※ ① ~ ③ 반드시 기재
시각장애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시력/시야 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	
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시력 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	
뇌병변장애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증상 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	
기타	-	장애유형 및 정도(증상), 시험관련 불편사항, 필요한 편의제공 내용 등 기재	

※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 불인정)